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고양시

관 련 자 고양시 ○○○○○○(전 ○○○○○○○○) 지방○○○○○ ○○○

내 용

1. 임용결격자에 대한 사후 조치 부적정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범하거나, 같은 법 제255조에 따른 ‘부정선거운동죄’를 범하는 등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양시에서는 20○○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을 ○○○○○○○(지방○○○급상당)으로 2015. 2. 27. 부적정하게 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5. 2. 13. 시장방침에 따라 2015. 2. 16. 고양경찰서(○○○○○○-○○○)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회보 받은 결과에 의하면 ‘2015. 1. 29.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벌금 1백만원’을 처벌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통보되었음에도 100만원의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담당 실무자의 오판으로 2015. 2. 27.부터 2016. 1. 21.까지 근무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양시에서는 ○○○ ○○○을 채용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부시장, 위원장 포함 18명)하였으나,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외부위원을 8명이 아닌 7명(○○○, ○○○, ○○○, ○○○, ○○○, ○○○, ○○○)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여야 함에도 호선없이 관례적으로 호선없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한 결과 결국 관련 규정상 충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을 채용하였다.

3.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2’항의 ○○○ ○○○을 채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4.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위원회 임용 의결과정 없이 별정직 채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

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하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양시에서는 ○급상당 ○○○를 임용함에 있어서 사전 채용계획에 대한 심의계획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절차를 거쳤으나,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를 득한 후, 비위면직여부와 신원조사를 거쳤으나 어떠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임용관련 의결 과정 없이 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